

2021 제2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영국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프랑스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외국법제동향

- 일본 바이오뱅크 및 인체 시료·정보 관련 법제 동향
- 일본 「디지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논의 동향
- 미국 「무역확장법」과 수입규제 법제 동향
- 미국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과 국방획득전문가 양성제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1 제2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신청기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영국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조의행 | 서울신학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I. 들어가며

보이지 않는 질병이 세상의 풍경을 바꾸었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인류는 속수무책이라고 할 정도로 무기력했다. 신속하게 백신을 구매한 이스라엘은 집단면역에 가까워졌기도 했지만, 종식된 것은 아니다. 세계화로 인해 촘촘해진 인적·물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한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는 완전한 정상생활까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확산할 때 정부의 대응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방역을 위한 엄격한 격리와 이동제한이다. 기본권이 제한되지만, 감염자의 증가로 보건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기타 중증 환자의 치료 또한 어려워진다. 하지만 정부의 확진자에 대한 강제격리와 봉쇄로 대표되는 이동제한은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큰 문제를 낳는다. 즉, 강력한 봉쇄는 감염병 유행을 억제해 의료위기를 완화하지만, 동시에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과 시장에 강력한 개입이 동시에 필요하며, 많은 경제학자는 감염병 유행 초기부터 다양한 선제적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보건에 대한 투자와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특히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고용을 유지해 경제활동을 유지 및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을 꼽을 수 있다.¹

한편 영국인들은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2020년 3월 12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서서히 집단면역을 키우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으나, 빠른 확산세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가 가시화되자 며칠 지나지 않아 봉쇄와 휴교령 등 강경책으로 급하게 선화했다. 하지만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총리마저 감염되어 사망할 뻔했다. 여름이 지나면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영국 확진자 수는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다시 폭증해 신규확진자가 하루 6만 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1 제이슨 퍼먼, '사람이 먼저, 경제는 그다음', (폴 크루그먼 외/ 매일경제신문사 역) "코로나 경제전쟁",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20), 45-47

물론 영국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방역에는 실패했지만, 감염병 유행으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타격을 입게 될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즉각 수립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2020년 3월 25일에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법」을 들 수 있다.² 총 84개의 조항과 27개의 부칙(Schedule)으로 구성된 이 법은 의료, 보건, 수사, 식품공급, 교육, 연금, 결사, 선거, 재정지원, 부동산 임대·임차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감염병 유행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이때를 전후해 서민계층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졌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서민계층을 위한 법 과 제도 및 조치 등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II. 「코로나바이러스법」

1. 입법취지와 목적

영국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 방역 대처에서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인 대응은 빨랐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법」은 감염병 유행으로 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25일 제정되었다. 법 제정 목적과 취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확산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된 보건과 방역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확보해 현장에 투입하고, 관련 환자 관리와 사망자 대응 규칙과 절차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공공집회와 대중 교통에 대한 통제, 교육 시설과 상점 등에 대한 폐쇄 명령, 그리고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격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국경과 항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 5월 7일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연기하고 다른 선거와 연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본 글과 가장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경제활동 위축으로 임대료 지급이 어려운 임차인 보호와 근로자 급여를 위한 사업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³

2 본 법률의 전문 국역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번역자료집이 있다.

3 김예경, '영국 의회,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Coronavirus Act 2020) 제정',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44호, 국회입법조사처

표1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조항과 주요 내용⁴

조 항	내 용	조 항	내 용
제1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의	제48-49조	공중보건의 보호
제2-5조	의료 전문가의 긴급 등록	제50조	항구 운영중단에 대한 권한
제6-7조	사회복지사 임시 등록	제51조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과 관련된 권한
제8-9조	긴급 자원봉사자	제52조	행사, 모임 및 건물과 관련된 권한
제10조	정신건강 및 정신 능력	제53-57조	법원 및 재판소: 비디오 및 오디오 기술 사용
제11-13조	보건 서비스 면책	제58조	신체와 관련된 권한
제14-17조	NHS 및 지방정부 관리와 지원	제59-70조	선거 연기, 국민투표, 청원 취소 및 유세활동 (웨일즈·스코틀랜드 포함)
제18-21조	사망·사산자 등의 등록	제71조	기타 행정 요구사항
제22-23조	수사권	제72-24조	국민보험료
제24조	지문 및 DNA 프로파일	제75조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25-29조	식품공급	제76조	HMRC(HM Revenue & Customs) 기능
제30-32조	조회	제77조	소득세 공제 등 인상
제33-35조	공개: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제78조	지역 권한 회의
제36조	백신: 스코틀랜드	제79-80조	입찰약정 연장
제37-38조	학교, 보육원 등	제81조	거주지 퇴거로부터의 보호
제39-44조	법정질병급여	제82-83조	영업권 몰수로부터의 보호
제45-47조	연금	제84조	영국 교회의 총회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보건, 의료, 일상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은 근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법률이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강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법은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및 단축할 수 있으며, 의회는 반년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2. 퇴거로부터의 거주 목적 임차인 보호(제81조)

위의 표1에서 보았듯이 「코로나바이러스법」의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 임대인과 임차인(주택 및 상가 모두 포함)의 관계 및 권리에 관한 조항이다. 우선 제81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81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거주 목적 부동산(residential tenancies): 퇴거로부터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본 조항의 목적은 우선 일반적인 입법체계에서 거주

4 김은진,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령 및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40호, 국회입법조사처

목적 부동산을 보유한 자 - 곧, 임대인(landlord) - 들은 법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자 - 곧, 거주 목적 임차인 -를 퇴거시킬 수 있다. 여기서 법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는 퇴거 관련 유효한 의사 통지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만약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면 그 이유를 증명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증명 중 하나가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이 누적되었을 경우이다. 세입자는 1977년 「임대법」, 1985년, 1988년 및 1996년을 거치며 제·개정을 거친 「주택법」에 의해 명시된 민간 및 공공임대에 속한 자를 지칭한다.

본 조항이 추가된 이유는 감염병의 급격한 유행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가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민간 및 공공임대의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계약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임대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한 퇴거 요건에 해당한다. 정부로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법」은 감염병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대법」의 퇴거 통지시기를 기존 2주~2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법」 부칙(Schedule) 제29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대인은 퇴거 통지를 하는데 최소 3개월 이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도 이전 절차 개시 의사 통지(notice of intention to commence possession proceedings)” 절차를 집행할 수 없다(Schedule 29(4A)). 위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은 물론 그 이유와 개시 일자를 포함해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Schedule 29(4C-D)). 법원은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한 임대인에 의해 명도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허가한다(Schedule 29(4E)).⁵

그러나 영국 정부는 감염병 확산 추세가 사그라지지 않자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본 퇴거 공지 관련 일부를 개정했다(Coronavirus Act 2020 (Residential Tenancies: Protection from Eviction) (Amendment)).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퇴거 통지 의무 기간을 잉글랜드 지역 한정하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영국 법원은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코로나바이러스법」에서 규정한 통지기한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3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명도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입자를 보호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세입자만을 보호한 것은 아니다. 폭동, 임대한 부동산의 비도덕적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 및 가정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ur)을 하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 공지 기간은 4주이다. 로버트 젠릭(Robert Jenrick) 주택·지역사회·지방행정부 장관은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정부들에 대하여 이 법의 개정을 알리는 서신을 통해, 불법 사용 등 반사회적 행동에 따른 퇴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임대인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⁶

5 전해원,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외국은 어떻게 풀었나”, (시사인) (2020.12.1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8>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15일)

6 Robert Jenrick, “Coronavirus Act 2020 (Residential Tenancies: Protection from Eviction) (Amendment) (England) Regulations 2020: letter to local authorities”,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20년 9월 7일):

3. 영업목적 부동산 임차인 보호(제82-83조)⁷

거주 목적 임차인 보호 관련 규정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법」의 제82조와 제83조의 영업목적 임대(Business tenancy)에 관한 내용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플랫폼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이거나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민생경제와도 직결된다. 하지만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이미 2020년 3월부터 도시 봉쇄조치를 단행했던 영국에서 자영업자들이 받는 수익 감소의 폭은 매우 컸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비침체로 인한 수익 감소는 식당이나 술집과 같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임대료로 인한 주요 소득 흐름을 박탈당해 매각 혹은 대체 수단을 추구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82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측면이다. 1954년의 「임대인과 임차인법(Landlord and Tenant Act)」과 1996년의 관련 행정명령에 의하면 영업목적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임대료 지불 지연(persistent delay in paying rent)”이 있으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임대인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이 같은 경우, 계약의 조기 종료 및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법」 제 82조 1-4항은 이어지는 감염병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조기 계약종료나 임차인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없도록 했다.

본 조항의 또 다른 목적은 임대인 보호라고도 할 수 있다. 거주 목적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 제81조와는 달리,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 임대인은 이 법이 발효된 이후 3개월 - 2020년 6월 30일 - 이후에는 오히려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물론 법원은 제81조 사례와 마찬가지로 명도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코로나바이러스법」이 연장됨에 따라 제82조의 임차인 사업주도 2021년 3월 말까지 사업장 내 재산과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기까지 대부분 임대인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사업주(임차인) 보호를 위한 유연함과 이해력, 그리고 의지 또한 보여주었다.”⁸ 영국 정부 또한 코로나 시대 영업목적 부동산 - 곧, 상가 - 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중재할 짧은 가이드(Guidance for Landlords and tenants)를 마련했다.⁹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24647/Letter_to_LA_Chief_Execs_Notice_Periods.pdf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6일)

7 제83조는 북아일랜드의 영업목적 부동산 임차인 보호 관련 조항으로 내용적으로 제82조(잉글랜드·웨일즈)와 대동소이하다.

8 영국 주택·지역사회·지방행정부 장관 외, “Business evictions ban extended until March”,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보도 자료), (2020년 12월 9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business-evictions-ban-extended-until-march>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28일)

9 영국 주택·지역사회·지방행정부, “Guidance for Landlords and tenants”,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7 April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and-renting-guidance-for-landlords-tenants-and-local-authorities/coronavirus-covid-19-guidance-for-landlords-and-tenants>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1일)

다만 건물 임대인이 법원의 소송금지와 연장된 「코로나바이러스법」 때문에 1년 이상 유연함과 이해력만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다. 법령 제정 외에도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영국 정부의 상가 임차인을 포함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조치 중 몇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다.

III. 재정지원제도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출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투입된 자금이 1,887억 파운드(약 285조 원)에 이르렀다. 이 규모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9.4%로, 영국 국민 1인당 약 3천 파운드(약 450만 원) 지원에 해당하며, 2019~2020년의 보건복지 예산보다 많다. 그러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추가 재정지원 계획 또한 내놓았다.¹⁰ 앞서 표1의 「코로나바이러스법」의 각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 정부는 과감한 공적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후술할 영국 정부의 감염병 대응 조치는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지원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2020년 3월 1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제도’를 도입했다. 취지는 감염병 확산으로 나타나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해고 혹은 한시적인 강제 휴직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도입했다. 사업체의 수익 감소에도 소속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YE라 불리는 급여체계(payroll scheme)에 가입된 모든 영국 사업체는 이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최소 3주간 이상 휴직을 하는 근로자 급여를 정부의 고용유지 보조금으로 보존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2,500 파운드(한화 약 379만 원)를 상한으로 통상월급(고정급여와 상여금, 비현금성 급여 등을 포함한 변동급여)의 80%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고정급여는 2020년 3월 19일 혹은 그 직전 급여가 기준이며, 변동급여의 경우에는 2019~2020년 과세연도 평균급여 혹은 해당 기간 급여 총액 중 더 높은 쪽에서 고정급여를 제한 금액이다. 한편 휴직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체(혹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문서로 된 합의가 필요하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히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자는 물론이고 병가로 휴가 낸 직원도 해당한다.¹¹

10 박대환, “영국,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285조원 사용…GDP 10% 육박”, (연합뉴스), (2020년 7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150151085>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2일)

11 Samantha Mann,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Explained, (Global Payroll Magazine), (August/September 2020): <https://www.gpminstitute.com/publications-resources/Global-Payroll-Magazine/august-september-2020/coronavirus-job-retention-scheme-explained>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15일)

본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다소 변경되어 4개월 동안 다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7월과 8월 급여는 종전과 다르지 않으나, 사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및 휴직 기간 중 재정지원을 받던 '국가보험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과 사업체의 '퇴직연금 자동가입 최소 기여금(minimum automatic enrolment employer pension contributions: 이하 연금)'이 사업체가 지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9월부터는 정부의 급여지원 비율이 70%로, 줄어든 10%는 사업체가 지급하며, 10월 마지막 달에는 정부 대 고용주의 급여 부담비율이 60% 대 20%로 다시 바뀌었다.¹² NIC와 연금은 마찬가지로 사업체가 부담했다. 하지만 가을이 지나면서 확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위 제도는 연장되었다.

2021년 3월 17일, 영국 정부는 수정된 고용유지제도의 기한과 지원금 규모를 다시 지정해 공지했다. 5개월 동안 운영되는 것으로 9월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¹³ 영국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과 사업체 부담 비율 및 부담금은 2020년 하반기(7월~10월)와 같다.

표2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와 사업체 부담 비율¹⁴

2021년	일시휴직 근로자 급여 총액과 비율	정부부담 비율	사업체 급여 부담 비율	사업체 NICs & 연금 부담
5월	80% up to £2500	80%	없음	0
6월	80% up to £2,500	80%	없음	0
7월	80% up to £2,187.50	70%	10%	0
8월	80% up to £1,875	60%	20%	0
9월	80% up to £1,875	60%	20%	0

2.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은 규모가 큰 사업체보다 작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 훨씬 크다. 특히 고용인을 두지 않는 자영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대를 통해 영업장을 마련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익 감소는 임대료 미지급 문제와 직결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인구 대비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한국의 25.4%보다 낮은 15.4%이다.¹⁵ 다만 영국의 자영업자 수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구

12 위키 글

13 사업체의 신청 절차와 종료 시기는 공식 문서로서 영국 정부 관련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다;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step by step guide for employers, (11 March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job-retention-scheme-step-by-step-guide-for-employers>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6일)

14 CBI(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Factsheet: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BI), (17 March 2021): <https://www.cbi.org.uk/articles/cbi-coronavirus-job-retention-scheme-factsheet/>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7일)

15 윤호원, "자영업자 안 줄이면 '고용 쇼크' 발생한다", (프레시안), (2019년 6월 22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5704#0DKU>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8일)

준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아지던 자영업 종사자의 수가 감염병이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¹⁶ 이런 측면에서 영국 정부의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를 통한 재정지원은 앞서 정리한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민생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3월 26일, 영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는 2021년 4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시행되었다.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연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의하면 이 제도는 2021년 9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제1차 보조금을 중심으로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의 3개월 월평균 수익의 80%, 총액 7천 500파운드(한 달 기준 2천 500파운드)를 최고 상한액을 과세 보조금(taxable grants)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약 2개월의 신청 기간을 두었다. 제1차의 경우에는 5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7월 13일에 마감했다.¹⁷ 다만 과세 보조금의 비율이나 최고 금액은 각 차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21년 5월 현재,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대한 제4차 자영업자 소득지원 신청이 지난 4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제4차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제4차 보조금을 받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¹⁸

- 반드시 자영업자 또한 개인이어야 하며, 신탁이나 유한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지난 2년의 회계연도 세금 납부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한다.¹⁹
 - 2019년부터 2020년 및 2021년 3월 2일 이전까지의 납세 신고서
 -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납세 신고서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선택해야 한다.
 - 거래 중임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
 -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시적인 경제활동 중지
- 신청할 때에는 향후 거래, 곧 경제행위를 할 의도가 있으며, 이익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선언(declare)해야 한다.

16 Statista, "Number of self-employed workers in the United Kingdom from May 1992 to February 2021", (Statista), (April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18234/united-kingdom-self-employed/>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8일)

17 각 차수별 정부 보조금 비율과 최고 상한액의 차이는 다음의 의회 문서를 참조한다. Antony Seely and David Hirst, 'Coronaviru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Briefing Paper", No.8879, April (London: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879/>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3일)

18 위의 글

19 영국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가 신청한 제4차 자영업자 소득지원 보조금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의 평균 수익의 80%로 책정되며, 총액은 7천 5백 파운드로 제1차와 같았다. 신청할 때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감염병의 영향으로 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서류 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3. 기타 관련 제도

앞서 소개한 「코로나바이러스법」이나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제도’ 등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도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세금 관련 제도로 ‘부가가치세 납세 연기(Pay VAT deferred due to coronavirus)’나 ‘자체 평가 납세 연기(deferring Self-Assessment payments on account)’를 들 수 있다. 또한 2020년 3월 13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의 치료비 (Statutory Sick Pay)를 지급한 사업체에게 이 금액을 환급해 주는 ‘직원 의료비 지급 지원(Support for businesses who are paying sick pay to employees)’도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세 연기(Pay VAT deferred due to coronavirus)’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영국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와 더불어 영국 정부의 주요 세수 자원으로 전체의 21%의 비중을 차지한다. 27%를 차지하는 소득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²⁰ 2020년 7월 8일,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이어지는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큰 업종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를 현행 20%에서 5%로 인하했다. 이 조치는 2021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한 조치다.²¹

부가가치세 관련 영국 정부의 조치는 이미 2020년 3월 26일에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와 같은 재정지원 정책 중 하나로써 발표된 바 있었다. ‘부가가치세 납세 연기’로 명명된 이 제도를 통해 사업체는 2020년 3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자나 벌금이 부과되는 않는다. 다만 2020/2021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월 31일까지는 납세해야 한다. 그렇지만 2021년 4월 기준으로, 만약 여전히 전년도 부가가치세가 미납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021년 2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1일까지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연기를 위한 새로운 납부 체계 (the VAT deferral new payment scheme)’를 통해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다.

20 박정수,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I) - 부가가치세 영국편”,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8-10쪽

21 김경수, “[글로벌-이슈 24] 영국, 부가세 20%서 5%로 인하·음식점 등 대상 6개월 간 41억 파운드 경감”, (글로벌이코노믹), (2020년 7월 9일):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0070920232185599ecba8d8b8_1&md=20200709202438_R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9일)

IV. 나가며

팬데믹의 시대, 영국의 재정정책은 과감했다.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나라답게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정을 풀어 수요를 창출해 민생경제를 부양하고자 했다. 특히 실업률을 줄이고자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제도’에서 정부가 나서 사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진한 케인스의 향기가 느껴진다. 최근 영국의 백신 접종률이 두드러지게 올라가면서 영국 국민이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지금껏 연장의 연장을 이어왔던 「코로나바이러스법」이나 그 외 제도 및 조치 등의 종식도 머지않은 듯하다.

다만 영국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적자로 인해 영국의 앞날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영국 금융 리서치 기관 헤테로노믹스(Heteronomics)의 수석 경제학자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도입한 3차 봉쇄조치로 인한 재정적자가 4천 500억 파운드(약 66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과 동시에 이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적자 수치라고 지적했다.²² 더군다나 영국은 이 와중에 유럽 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종료했다.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인류의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든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백신이 그나마 희망이지만 전 인류의 집단면역은 과연 언제일지, 이 또한 멀게만 느껴진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선진국으로 불려왔던 국가들의 실패 또한 지켜봤다. 북미와 유럽에서의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와 보건정책의 실패는 선진국의 영역에 막 진입한 대한민국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방역 실패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비록 공공보건과 방역의 영역에서 실패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들 국가의 국민과 기업 대상 경제정책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이 가시화되던 2020년 3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의 모든 법·제도 및 조치 등을 확정해 공표 및 실시했다. 비록 감염병의 확산 정도와 확진자 수 및 경기침체 정도에 따라 조금씩 법 개정 및 수정이 없지는 않았지만,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관되게 운영해왔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방역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민생대책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해 온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22 김범수, “영국, 3차 봉쇄로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666조원 예상”, (YTN), (2021년 1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83200009> (최종방문일: 2021년 5월 9일)

참고문헌

- 김범수, “영국, 3차 봉쇄로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666조원 예상”, YTN (2021.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83200009>
- 김예경, ‘영국 의회,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Coronavirus Act 2020) 제정,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44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은진,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령 및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40호, 국회입법조사처.
- 박대한, “영국,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285조원 사용…GDP 10% 육박”, 연합뉴스 (2020.7.9.),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150151085>
- 박정수,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I) - 부가가치세 영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윤호원, “자영업자 안 줄이면 ‘고용 쇼크’ 발생한다”, 프레시안 (2019.6.2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5704#0DKU>
- 전해원,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외국은 어떻게 풀었나”, 시사인 (2020.12.1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8>
- 제이슨 퍼먼, ‘사람이 먼저, 경제는 그다음’, (폴 크루그먼 외/ 매일경제신문사 역) “코로나 경제전쟁”, 매일경제신문사, 2020.
- 한국법제연구원,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번역자료집
- CBI(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Factsheet: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BI), (17 March 2021), <https://www.cbi.org.uk/articles/cbi-coronavirus-job-retention-scheme-factsheet/>
-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step by step guide for employers”, (11 March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job-retention-scheme-step-by-step-guide-for-employers>
- Jenrick, Robert, “Coronavirus Act 2020 (Residential Tenancies: Protection from Eviction) (Amendment) (England) Regulations 2020: letter to local authorities”,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7 September 2020),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24647/Letter_to_LA_Chief_Execs_Notice_Periods.pdf
- Mann, Samantha,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Explained”, (Global Payroll Magazine), (August/September 2020), <https://www.gpminstitute.com/publications-resources/Global-Payroll-Magazine/august-september-2020/coronavirus-job-retention-scheme-explained>
-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Guidance for Landlords and tenants”,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7 April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and-renting-guidance-for-landlords-tenants-and-local-authorities/coronavirus-covid-19-guidance-for-landlords-and-tenants>
- Seely, Antony & Hirst, David, ‘Coronaviru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Briefing Paper”, No.8879., April (London: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879/>
- Sharma, Alok (MP) & Jenrick Robert (MP), “Business evictions ban extended until March”,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Press Release), (9 December 2020), <https://www.gov.uk/government/news/business-evictions-ban-extended-until-march>
- Statista, “Number of self-employed workers in the United Kingdom from May 1992 to February 2021”, (Statista), (April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18234/united-kingdom-self-employed/>

KLRI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